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적합성) 시험수수료

◎ 기본 수수료

단위 : 원

시험항목	제 품 구 분			
	소형단상 (주1)	중형단상 (주2)	대형단상 (주3)	대형 3상 (주3)
방사성 장애	220,000	330,000	440,000	660,000
전도성 장애	90,000	135,000	180,000	270,000
정전기방전 내성	180,000	270,000	360,000	540,000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450,000	600,000	800,000	1,200,000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	130,000	195,000	260,000	390,000
서지 내성	130,000	195,000	260,000	390,000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220,000	330,000	440,000	660,000
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	180,000	270,000	360,000	540,000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	130,000	195,000	260,000	390,000
합계 비용	1,730,000	2,520,000	3,360,000	5,040,000
음압 시험 비용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방사 시험시 GHz 추가 시	300,000	450,000	600,000	900,000
통신 전도 시험시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총 합계 비용	2,530,000	3,720,000	4,960,000	7,440,000

(주1) 소형 : 20kg 이하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2) 중형 :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3) 대형 :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의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 추가 수수료

A. 시험 모드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 수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추가하여 산정한다.

$$\text{시험수수료} = \text{기본수수료} + \text{추가수수료} = \text{기본수수료} + \{1/2(\text{시험모드 수} - 1) \times \text{기본수수료}\}$$

B. 전화기의 잡음전력 및 음압시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C. 제품의 전원입력이 32A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 한다.

대기전력저감 시험수수료

◎ 기본 수수료

단위 : 원

시험항목	시험수수료
대기전력저감	300,000

무선 EMC 분야 시험수수료

● 기본 수수료

단위 : 원

시험항목	제 품 구 분					
	배터리 (주1)	DC소형 (주2)	소형단상 (주3)	중형단상 (주4)	대형단상 (주5)	대형 3상 (주5)
방사성 장애	220,000	220,000	220,000	330,000	440,000	660,000
전도성 장애	N/A	N/A	90,000	135,000	180,000	270,000
정전기방전 내성	180,000	180,000	180,000	270,000	360,000	540,000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350,000	350,000	350,000	525,000	700,000	1,050,000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	N/A	130,000	130,000	195,000	260,000	390,000
서지 내성	N/A	130,000	130,000	195,000	260,000	390,000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N/A	180,000	180,000	270,000	360,000	540,000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	N/A	N/A	130,000	195,000	260,000	390,000
합계 비용	750,000	1,190,000	1,410,000	2,115,000	2,820,000	4,230,000
음압 시험 비용	500,000	500,000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방사 시험시 GHz 추가 시	300,000	300,000	300,000	450,000	600,000	900,000
통신 전도 시험시	200,000	200,0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총 합계 비용	1,750,000	2,190,000	2,410,000	3,615,000	4,820,000	7,230,000

(주1) 휴대용기기 : 내장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외부 전원이 없는 기기

(주2) DC 소형제품 중 차량용 제품은 차량 환경에서의 과도현상 및 서지 시험비용 추가

(주3) 소형 : 20kg 이하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4) 중형 :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5) 대형 :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의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 추가 수수료

A. 시험 모드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 수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하여 산정한다.

$$\text{시험수수료} = \text{기본수수료} + \text{추가수수료} = \text{기본수수료} + \{1/2(\text{시험모드 수} - 1) \times \text{기본수수료}\}$$

B. 전화기의 잡음전력 및 음압시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C. 제품의 전원입력이 32A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 한다.

D. 주요 제품별 시험 모드수는 다음과 같다.

1) WLAN a,b,g,n or Bluetooth → 1 또는 2 시험 모드(주파수 Band별 시험)

2) 휴대폰 → 6 시험 모드(음성통화, BT, WAN, Camera, MP3 or MP4, USB)

3) 중계기 → 제품에 따라 선택(1~4 시험 모드)

무선설비기기 시험수수료

단위 : 원

대 상 기 기	시험수수료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1,500,000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1,100,000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1,500,000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1,300,000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1,300,000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1,82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1,5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1,5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100,000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1,300,000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1,300,000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1,82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1,5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1,5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100,000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1,500,000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1,500,00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1,500,00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300,000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100,000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000,00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300,000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1,300,00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1,500,00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1,500,00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100,000
대 상 기 기	시험수수료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1,0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1,2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1,2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1,1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1,5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1,5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1,1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1,1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1,500,000
RFID/USN용 무선기기	1,200,00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1,500,000
UWB 및 용도 미지정 기기(UWB)	1,500,000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1,100,00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1,100,000
해양경비 안전망용 무선설비	1,500,000

※ Note

1. 기종 또는 방식이 20이상인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2. 20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당해 기능시험마다 기본시험비의 50%를 추가 적용한다.
(단, 1개의 제품에 20이상의 복합기능이 내장될 경우 및 다량의 모드가 적용되는 경우 시험비의 30~50%내에서 협의 적용)
 - 20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적용 예 : AC, DC, POE 등 공통전원 사용기기)
 - 운용 주파수대역이 20이상인 기기(적용 예 : 단파대용 아마추어기기)
 - 연속적 또는 단계적 출력가변기기(적용 예 : 중계기, 전력절감형기기)
 - 20이상의 전파형식을 갖는 기기(적용 예 : 제어채널을 갖는 기기)
 - 20이상의 통신방식을 갖는 기기(적용 예 : 무선LAN의 OFDM, DSSS 등)
 - 20이상의 송신 출력단을 갖는 기기(적용 예 : 무선LAN 중 다중 송신단을 갖춘 경우)
 - 20이상의 장치를 갖는 기기(적용 예 :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 고정장치 등)
 - 20이상의 송, 수신안테나를 갖는 기기(적용 예 : 양방향중계기)
 - 기타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
3.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5배, 대형은 2배, 대형 3상은 3배의 수수료를 적용
4.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전자파흡수율 시험수수료

단위 : 원

대 상 기 기	구 분	시험수수료
두부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본 요금	2,000,000
	추가 대역	1,000,000
	각 대역별 추가모드	1,000,000
몸통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본 요금	2,000,000
	추가 대역	1,000,000
	각 대역별 추가모드	1,000,000

※ Note

1. 전자파 흡수율 측정은 기자재별로 시험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므로 기본요금에 대역, 모드 추가 시험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2. 추가 대역에 대한 시험은 새로운 시험조건을 요구하므로 기본 요금의 70 %, 동일 대역에서 추가 모드에 대한 시험은 기본 요금의 60 % 수준의 비용을 적용함.
3. 기본요금은 1 대역, 1 모드에 대한 비용임.
4. 기자재의 무선대역/모드별 평균전력을 측정하여 공중선전력이 20 mW 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시험이 실시되므로 기본요금에 공중선전력이 20 mW 를 넘는 대역, 모드에 대한 추가 시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예) 추가 시험비용 = 추가 대역, 모드 수 X 추가대역/모드요금
5. 두부, 몸통 전자파 흡수율 측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몸통은 추가 모드로 간주하여 시험비용을 산정한다.
6. 무선방식(예, 무선랜+WCDMA+LTE 등) 이 여러개인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대해 기본요금에 부가하여 추가시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7.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전기용품 EMC 시험수수료

단위 : 원

제품군(군별)	적용규격	시험항목	시험비	Category	비 고
· 전기기기용 스위치(2번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4번군) · 절연변압기(6번군) · 전기기기 일반제품(7번군) · 전기기기 대형제품(7번군) · 전동공구(8번군) · 직류전원장치나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기기(12번군)	EMI (KN 14-1)	CE(AC 전원전도)	90,000	1~4	※ EMI의 방해전력, 방사성장해 방해전력에서 Fail될때, 방사로 측정하여 Pass 되면 방사 측정 데이터로 진행 가능함(Fail되지 않아도 방해전력과 방사 중 제조자 요청에 의해 선택 가능) ※ EMS · Category 1 : 전기적인 회로가 없는 제품 · Category 2 : 전기적인 회로가 있으나 15MHz 이상의 클럭/발진 주파수를 갖지 않는 제품 · Category 3 : 15MHz 이상의 클럭이나 발진 주파수를 갖지 않는 배터리 사용 제품 · Category 4 : 제품군 1~3에 해당하지 않고 본 규격의 적용 범위에 적용 받는 모든 기기류
		방해전력	220,000	1~4	
		방사성 방해	220,000	1~4	
		Click	220,000	1~4	
	EMS (KN 14-2)	ESD	180,000	2~4	
		RS	350,000	3~4	
		EFT	130,000	2, 4	
		Surge	130,000	2, 4	
		CS	180,000	2, 4	
		V-Dip/ Interruption	130,000	2, 4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9번군)	EMI (KN 13)	전도	120,000		※ 기본 비용에 기능(Aux Port, USB, 외부 입력단자가 다수인 경우)이 추가될 경우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정보/사무기기 기능이 있는 제품은 KN 22, 24 규격 추가 적용
		방사성방해	230,000	수신기에만 적용	
		잡음전력	160,000	관련기기(수신기외)	
		안테나 단자전압	160,000	수신기에만 적용	
	EMS (KN 20)	S1		AM은 제외	
		S2a		AV단자가 있는 제품	
		S2b		안테나 단자 보유시	
		S3		높이 70cm 이상인 경우 RS 시험으로 대체	
		S4		Car라디오 주파수가 1GHz 이상인 경우 제외	
		Keyed 캐리어		휴대폰 내성시험	
		ESD		모든 기기에 적용	
		BURST			

제품군(군별)		적용규격	시험항목	시험비	Category	비 고
· 정보/사무 기기	· 직류전원장치 (안전인증전환 정보기기류)/마우스 등(소형제품)/PC, 모니터, 스캐너, 팩스 등/ 서버급 PC, ATM 복합기 등	EMI (KN 22)	CE(Main 전원)	90,000		*주1) 제품에 통신 포트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주2) 제품의 최대 사용주파수가 108MHz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됨 *주3) 제품이 Magnetic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CE(통신 포트)	200,000	주1)	
			RE(30MHz~1GHz)	220,000		
			RE(1GHz~6GHz)	300,000	주2)	
		EMS (KN 24)	ESD	180,000		
			RS	350,000		
			EFT	130,000		
			Surge	130,000		
			CS	180,000		
			MF	180,000	주3)	
V-Dip/ Interruption	130,000					
멀티미디어 기기	ITE & AV 기기	EMI (KN 32)	CE(Main 전원)			*주1) 제품에 통신 포트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주2) 제품의 최대 사용주파수가 108MHz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됨 *주3) 제품이 Magnetic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주4) 제품이 음성 출력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CE(통신 포트)		주1)	
			RE(30MHz~1GHz)			
			RE(1GHz~6GHz)		주2)	
		EMS (KN 35)	ESD			
			RS			
			EFT			
			Surge			
			CS			
			MF		주3)	
V-Dip/ Interruption						
음압 시험		주4)				
· 조명기기(11번군) (형광등, 백열구, 무전극, LED 등)		EMI (KN 15)	CE(전도)	90,000		* 컨버터가 인증받은 경우 EMI (KN 15)만 시험 * 컨버터가 인증받지 않은 경우 EMI (KN 15) / EMS (KN 61547) 시험 * EMI : 컨트롤러(디머)를 포함하게 되면 MAX (100%), MEDIUM(60%), MIN(20%)에서 각각 시험 *EMS : 컨트롤러(디머)를 포함하면(50±10)% 상태에서 시험 *주4) 마그네틱 소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
			RE(9kHz~30MHz)	220,000		
			RE(30MHz~300MHz)	200,000		
		EMS (KN 61547)	ESD	180,000		
			RS	350,000		
			EFT	130,000		
			Surge	130,000		
			CS	180,000		
			MF	180,000	주4)	
			V-Dip/ Interruption	130,000		

· 변경 및 파생모델 추가 시(필요시 시험)

※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5배, 대형은 2배, 대형 3상은 3배의 수수료를 적용

- 소형 : 20kg 이하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 중형 :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 대형 :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의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 KN 14 적용 제품(가정용 기기)

· 다기능 복합기기

시험기기의 기능 변환이 기기를 내부적으로 수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기준의 다른 절이나 다른 기준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다기능 기기는 각각의 기능별로 별도 시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기능이 관련규격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모든 규격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간주한다.

· 각 기능이 분리된 상태로 동작할 수 없거나, 또는 각각의 기능이 분리된 상태로 주요기능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시험기기는 동작에 필요한 기능만 각각의 적용규격의 항목만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선설비기기 시험수수료

◎ 기본 수수료

단위 : 원

시험항목	시험수수료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300,000

(붙임)

전기용품 품목별 목록표

제품군 (군별)	세부 제품명
전기기기용 스위치 (2번)	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자율안전인증 대상기기)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 인것은 제외한다.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4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절연변압기 (6번)	가.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나. 고주파웰더 (자율안전인증 대상기기) 다. 전기용접기 (자율안전인증 대상기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 대형제품 (7번)	가. 전기청소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주방용전열기구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의류나 옷감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바. 모발관리기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아. 주방용 전동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타. 전기온수기 파. 전기냉장·냉동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을 말한다) 하.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 가정용 전동재봉기

	<p>너.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더. 전기건조기(의류용을 말한다) 러. 전열기구 머. 전기마사지기 버. 냉방기 및 제습기 서.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 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 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어. 전기가열기기 저. 사우나기기 처.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커. 기포발생기기 터. 전격살충기 퍼. 전기욕조 허. 공기청정기(정격입력이 500W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고.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장치, 방전등 또는 액체 수납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는것만 해당된다) 노. 팬, 레인지후드(정격입력이 500W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도. 화장실용 전기기기 로. 가습기 모. 전기분무기 보. 전기소독기 소. 음식물처리기 오.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조. 그 밖에 가목부터 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p>전기기기 일반제품 (7번)</p>	<p>(자율안전대상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나. 감자 탈피기 다. 전기정미기 라. 전기 빵 자르개 마. 전기용해기 바. 애완동물 목욕기 사. 이미용기기 아. 전기 주류 숙성기 자. 전기시계 차.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카.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p>

	<p> 다. 컴프레서 파. 전기온수매트 하. 구강청결기 거. 전기분수기 너. 투영기 더. 해충퇴치기 러. 전기집진기 머. 착유기 버. 서비스기기 서. 전기에어커튼 어.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저. 폐열 회수 환기장치 처. 게임기구 커. 전동형 롤스크린 터. 전기훈증기 퍼. 수도 동결 방지기 허. 보풀 제거기 고. 산소이온 발생기 노. 전기정수기 도. 전기세척기 로.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모. 전기작동 도어록 보. 전기헬스기구 소.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에 한 한다) 오.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에 한 한다) 조. 그 밖에 가목부터 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p> <p>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p>
<p>전동공구 (8번)</p>	<p>전동공구</p> <p>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p>
<p>오디오·비디오 응용 기기 (9번)</p>	<p>(자율안전인증 대상기기)</p> <p> 가. 텔레비전수상기 나. 영상모니터 다. 편집기 라. 디스크플레이어 마. 앰프 바. 오디오시스템 </p>

	<p>사. 전자악기</p> <p>아.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p> <p>자. TV영상프로젝터</p> <p>차. 오디오프로세서</p> <p>카. 음성 및 영상분배기</p> <p>타. 영상전송기</p> <p>파. 영상프로세서</p> <p>하.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p> <p>거.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기)</p> <p>가.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p> <p>나. 비디오카메라</p> <p>다. 튜너</p> <p>라. 라디오수신기</p> <p>마. 리시버</p> <p>바. 음성기록계</p> <p>사. 음성플레이어</p> <p>아. 위성방송수신기</p> <p>자. 비디오폰</p> <p>차. 음질조절기</p> <p>카. 신호변환장치</p> <p>타. 컴프레서 게이트</p> <p>파. 전자시계</p> <p>하. CCTV 카메라</p> <p>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p> <p>너. 영상기록계</p> <p>더. A/V신호수신기</p> <p>러. CATV방송수신기</p> <p>머. 턴테이블</p> <p>버. 모듈레이터</p> <hr/> <p>비고)</p> <p>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정보·통신·사무기기 (10번)</p>	<p>가.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p> <p>나.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p>

- 다.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함)
- 라. 코팅기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자율안전인증 대상기기)
- 가. 모니터
- 나.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다. 프로젝터
- 라. 문서세단기
- 마. 천공기
- 바. 재단기
- 사. 제본기
- 아. 실물화상기
- 자. 입체영상기
- 차.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카.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
- 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 파.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하.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 너.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더.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러.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
을 말한다)
- 머. 원격제어방송기기
- 버. 그 밖에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기기)
- 가. 스캐너
- 나. 지폐계수기
- 다. 전자저울
- 라. 금전등록기
- 마. 어학실습기
- 바. 전자칠판 및 보드
- 사. 동전계수기
- 아. 전동타자기
- 자. 전기소자기
- 차. 교통카드 충전기
- 카. 번호표 발행기
- 타.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p>기기를 포함한다)</p> <p>파.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p> <p>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p> <p>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p> <p>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함)</p> <p>더.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 신호로 변환해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p> <p>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함)</p> <hr/> <p>비고)</p> <p>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조명기기 (11번)</p>	<p>가. 램프홀더</p> <p>나. 일반조명기구</p> <p>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p> <p>라. 안정기내장형램프 (자율안전인증 대상기기)</p> <p>가. 형광램프용 스타터</p> <p>나. 백열등기구</p> <p>다. 방전램프</p> <p>라. 기타 조명기구</p> <p>마. 기타 램프</p>
<p>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12번)</p>	<p>가. 주방용 전동기기</p> <p>나. 전기담요 및 매트</p> <p>다. 전기찜질기, 발보온기</p> <p>라. 전격살충기 (자율안전인증 대상기기)</p> <p>가.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p> <p>나.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기기)</p> <p>가. 공기청정기</p> <p>나. 충전용 전동공구</p> <p>다.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p> <p>라.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p>